

조선시대 지방 의생 제도에 대한 고찰

박훈평

화순마루요양병원 한방 6과

Review on Local Medical Cadets in Joseon Dynasty

Hun-Pyeng Park

Korean Medicine Sixth Department, Hwasun Maru Geriatric Hospital

The word Euisaeng (醫生) is shorthand the Euihaksangdo (medical cadets), that means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s. Throughout the Goryeo dynasty, Euisaeng was not mean medical student, but also primary healthcare.

Existing research on Euisaeng of Joseon dynasty has been grouped together, despite the identity and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Euisaeng. The authors have separated the two,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cuses on local Euisaeng.

The authors found the following facts in this study. First, status of Oebang-euisaeng (local medical cadets) was declined in the latter than in the early Joseon. Second, Oebang-euisaeng of the late Joseon was Layered Hyang'ri. Third, The local medical cadets was important, the role of primary healthcare.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 medical cadets was important, the role of a student learning medicine.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Euisaeng, Euihaksangdo, Oebang-euisaeng, Hyang'ri

I. 서론

醫生이란 용어는 醫學生徒를 줄인 말로,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되어왔다. 의생이란 용어는 중국 당나라 태종 때의 의학생이 시초이다.¹⁾ 이후 현종 때에 다시 의학생을 설치하면서, 그 업무를 州의 경내를 순회 치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²⁾ 신라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효소왕 원년(692)에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인 醫學을 설치하면서,³⁾ 醫學生은 의학이란 관청 안에서 의학을 교수 받는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후 의생의 의미는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의술을 교수 받아 시행하는 이로 확대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전통의 한의를 양의보다 낮추어 부르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전시기에 비해 사료가 풍부한 조선과 일제강점기의 의생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있다. 의생의 경우, 같은 용어라도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이므로, 반드시 시기를 특정해서 구분해야 써야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그 이전과 확연한 의미 차이를 보이므로 더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중앙과 지방의 의생은 시기에 따라 성격과 신분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조선의생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용어가 같다는 이유로 둘을 묶어서 논하기도 하고,⁴⁾ 연구자의 전공 분야에 따라 한 가지 면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⁵⁾ 본고에서는 지방과 중앙의 의생 제도를 구분하여, 지방 의생에 대하여 주로 논하였다. 기존 선행연

접수 ▶ 2016년 05월 04일 수정 ▶ 2016년 05월 14일 채택 ▶ 2016년 05월 14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249 마루요양병원
Tel : 061-373-9100 E-mail : lillipute@hanmail.net

- 1) 河南 등의 府에는 20명, 大도독부에는 12명, 上州에는 15명, 中州에는 12명, 下州에는 의생을 두었다. 傅芳, 鄭金生, 廖育群 著.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역. 『중국 과학기술사 의학편』. 서울:일지사. 2003:517-518.
- 2) 傅芳, 鄭金生, 廖育群. op. cit. p. 739. 단순히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에서 의료 기술자로서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 3)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등. 『한의학통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80.
- 4) 김두중. 『한국의학사 전』. 서울:탐구당. 1966:200, 418-419.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수서원. 1988:214-218.
- 5) 이준구와 김무진은 의생을 향리의 부류로만 논하였다. 이준구. 『조선 후기 신분지역 연구』. 서울:일조각. 1993:2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려 조선전기 중인 연구』. 서울:신서원. 2001:342-343.

구가 중앙 의생에 대해 치중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방 의생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外方醫生이라 불리었다.⁶⁾ 본고에서 따로 부기하지 않은 경우, 의생은 외방의생만을 지칭한다.

외방의생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나, 개괄적인 내용은 미키 사카에에 의해 의생교육기관인 醫學院(醫院)과 『경국대전』의 의생 정원 등이 소개된 바 있다.⁷⁾ 김두중은 이를 재차 인용했다.⁸⁾ 손흥렬은 지방 의생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록』의 외방의생 정원과 『대전속록』의 연소총민의 지역별 정원을 추가로 논한 성과가 있다.⁹⁾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정원 규정의 소개 정도에 그치고, 외방의생의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논자는 『실록』 등의 관련 사료와 여러 법전 등을 살펴본서, 외방의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적하였다. 먼저 의생 정원의 변천, 고과 등의 제반 규정을 살피고, 다음으로 그 신분과 지위를 고찰하였다.

II. 본론

1. 외방의생의 제반규정

1) 官制

6) 조선시대 醫官의 경우 내의원의 의관을 內醫로, 전의감과 혜민서의 의관을 外醫로, 그 외 향촌의 醫員을 外方醫 또는 方外醫로 칭했다. 외방의생이란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7) 三木榮, 『訂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思文閣, 1991:113, 123, 156.

8) 김두중, op. cit. p. 200, 418-419.

9) 손흥렬, op. cit. p. 214-218, 275.

10) 『실록』 태조 1년 7월 28일 기사. 이 당시 혜민국의 경우 의학교수를 담당하는 관원이 따로 없다. 태조 4년 7월 13일 기사를 보면 신설된 혜민국 직제에도 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태조 6년 8월 13일 처음 설치된 관청인 제생원의 소임도 이와 관련이 없다. 본고에서 『실록』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인용하였다.

11) 조선 중후기 전의감 생도 입속 과정인 완천에 대해서는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2013;26(1): 4-5. 참조. 이러한 완천은 동시기에 관상감, 사역원등 기술직 관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행해졌다.

12) 『실록』 태조 3년 11월 19일 기사.

13) 『실록』 세종 7년 5월 3일 기사. 삼의사에 의생방이 생길 때에 사역원 생도의 선례를 따랐다.

14) 界首官은 조선시대 지방 행정 제도로 지방의 중심이 되는 대읍이나 그 고을의 수령을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고을을 뜻한다. 세종 당시에는 39 고을의 계수관이 있었다. 이준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연구』, 서울:일지사, 1990:32-33, 362-365. 조선 태조 때의 계수관은 25고을이었다. 『실록』 태조 2년 11월 12일 기사.

15) 『실록』 태조 2년 1월 29일 기사.

16) 『실록』 세종 9년 11월 2일, 세종 16년 1월 30일 기사. 의원생도는 외방의생과 구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서 상세하게 논한다.

17) 권근의 『향약제생집성방』(1399년)서문에 나온다. 서문은 권근의 문집인 『양촌집』과 서거정이 편한 『동문선』에 전한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인용

18) 『실록』 태조 2년 10월 27일 기사. 중앙 醫學의 설치신라 효소왕 이후로 내려온 제도이기도 하다.

19) 조선시대에 함경도, 평안도 등지에서 유력한 토착민들에게 주는 특수 관직

20) 『실록』 태조 7년 9월 1일 기사. 김두중 또한 이를 지적한 적 있으나 의학조교는 제외한 채, 의학승만 언급하고, 지방에 따라 둔 醫務官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 김두중, op. cit. p. 200.

(1) 조선 전기

① 태조-태종기 『실록』 규정

태조 1년(1392) 전의감의 관제를 보면 종 8품 의학교수를 담당하는 博士 2원이 보이므로, 중앙의 의생은 이 시기에 전의감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 조선 건국 초에 어떻게 의학 관청 생도가 선발 되었는가는 자료부족으로 알 수 없다.¹¹⁾ 그러나 사역원 생도의 경우, 태조 3년(1394) 양민의 자제 중에서 한성부와 각도 계수관이 해마다 한 사람씩 뽑아 入屬시켜 교육시킨 것으로 보아,¹²⁾ 의학생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입속된 것으로 추정된다.¹³⁾

지방의 경우 태조 2년(1393), 각 도에 의학교유관이 파견되어, 界首官마다¹⁴⁾ 醫院을 두고, 양반의 자제를 뽑아 생도로 삼아 교육시키게 하였는데,¹⁵⁾ 이를 醫院生徒라 불렀다.¹⁶⁾ 이 때 醫院의 경우 醫學院으로도 불리기도 한다.¹⁷⁾ 이어 중앙에서도 六學의 하나로서 醫學을 설치하여 良家の 자제를 교육토록 하였다.¹⁸⁾

태종 6년, 평양부에 土官職¹⁹⁾으로 醫學院을 두었고, 태종 7년, 영흥부 土官 직제를 만들 때에 함흥부를 선례로 6품 醫學丞과 9품 醫學助教가 설치되었다.²⁰⁾ 이는 함흥부에도 동일한 토관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② 세종-세조기 『실록』 규정

세종 7년, 중앙의 의생은 전의감과 해민국, 제생원의 3
醫司에 각각 醫生房을 두는 것으로 확대되었다.²¹⁾ 세종 16
년(1434) 4월에 정해진 함길도와 평안도의 토관직은 다음
과 같다.

표 1. 세종 16년 함길도와 평안도의 토관 의관직²²⁾

군현명	관직명
함흥부	종8품 醫學院丞
경원부	종8품 司醫局丞
영북진	종8품 掌醫局丞
평양부	종6품 醫學院副使, 종8품 醫學院直長

태종 조의 함흥부 토관직과 비교하면 정원이 줄고, 품계
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세종 18년(1436)에는 종성부에
종 8품 醫學院綠事 토관직이 신설되었다.²³⁾ 『세조실록지리
지』에는 표 1에 나온 평양부와 함흥부의 토관직 외에 회령
도호부에도 종 8품 掌醫局丞이 토관직으로 언급되어 있다.

전체 외방의생의 정원은 세조 7년(1471)에 가서야 처음
으로 정해졌다.

표 2. 『세조실록』 7년 7월 기사의 정원²⁴⁾

단위	정원
留守府	20
大都護府	15
牧	15
都護府	15
知官 이하	10

기사에 나온 정원은 律學生과 의학생을 합한 수로 의학
생만의 수는 알 수 없다.²⁵⁾

외방의생만의 정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자료는
세조 12년의 『실록』 기사이다. 율학생 정원도 함께 나와 있
는데, 부는 10, 대도호부와 목은 8, 도호부는 6, 군현은 6
인이다. 둘을 합하여 세조 7년 7월 기사와 비교하면 그 수
가 약간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세조실록』 12년 1월 기사의 정원²⁶⁾

단위	정원
府	12
大都護府	10
牧	10
都護府	8
郡	6
縣	6

③ 『경국대전』의 규정

성종 12년(1481)에 완성된 『經國大典 禮典』 「生徒 조」
에 의생의 정원이 나온다. 수록 조문이 「생도 조」인 것은
의생을 의학생도의 줄인 말로 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표 4. 『예전』 「생도 조」의 정원²⁷⁾

단위	정원
府	16
大都護府	14
牧	14
都護府	12
郡	10
縣	8

이를 보면 세조 12년 때에 비해 정원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원 차이는 조선의 인구 증가와의 관련이 있을
수 있다.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 조」를 보면 당시의 府는
4, 大都護府는 4, 牧은 20, 都護府는 44, 郡은 82, 縣은 175
고을이다. 따라서 당시 외방의생의 총 정원은 3148명이다.

『이전』 「토관직 조」를 보면 세종 때에 존재했던 의학 관
련 토관직이 모두 혁파되었다.

(2) 조선 중후기

17세기에는 법전이 따로 없고, 이후 법전을 살펴보면 『경
국대전 예전』 「생도 조」의 규정이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21) 『실록』 세종 7년 5월 3일 기사. “禮曹據典醫監牒呈啓: “近者受教: ‘本監權知以本業出身者, 入屬本監.’ 劑藥事煩, 而隔三年取九人, 分送于本監及惠民局, 濟生院, 故醫員數少. 且醫術必須精習, 今外方生徒不隸本業, 雖出身, 至於劑藥, 治病, 皆未精熟, 誠爲未便. 請自今依司譯院例, 三司各立醫生房, 令習劑藥讀方書, 通曉醫術, 然後許令赴試.” 從之.” 해민국은 해민서로 바뀌고, 제생원은 해민서에 통합됨에 따라, 전의감과 해민서에 의학생도 제도가 유지된다. 전의감에서 내의원이 분화되고, 제생원이 혁파된 뒤로는 삼의사관 내의원, 전의감, 해민서를 지칭한다.

22) 『실록』 세종 16년 4월 21일 기사. 김두중 또한 이를 기술하였는데, 資階에 있어 모두 오류가 있다. 김두중. op. cit. p. 419.

23) 『실록』 세종 18년 윤6월 2일 기사. 김두중 또한 이를 기술하였는데, 資階가 오류이다. 김두중. op. cit. p. 419.

24) 『실록』 세조 7년 7월 24일 기사. 여기서 知官은 종4품 수령인 知事를 말하며, 知官 이하라 하면 州, 郡, 縣이 해당된다.

25) 손흥렬. op. cit. p. 275.를 보면 의학과 역학생도를 총합한 수를 단순하게 의학생도만으로 본 오류가 있다.

26) 『실록』 세조 12년 1월 19일 기사.

27) 본고에서 『경국대전』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① 『속대전』의 규정

18세기의 첫 법전은 영조 22년(1746)의 『속대전』이다.²⁸⁾ 『속대전 예전』 「생도 조」에는 중앙관서의 생도만 기록되고 지방생도 정원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② 『대전통편』의 규정

정조 8년(1784)의 『대전통편 예전』 「생도 조」에 정원 규정이 나오는데,²⁹⁾ 『경국대전 예전』 「생도 조」의 규정과 동일하다.

③ 『대전회통』의 규정

고종 2년(1865)의 『대전회통 예전』 「생도 조」에 정원 규정이 나오는데,³⁰⁾ 『경국대전 예전』 「생도 조」의 규정과 동일하다.

④ 『육전조례』의 규정

고종 4년(1867)에 간행된 『육전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³¹⁾

2) 考課

의생의 고과에 대한 문헌 내용은 조선 전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기 이후에서 찾을 수 없다.

(1) 고을 백성 치료 실적

고을 백성 치료는 의생의 주요 업무로서 그 실적으로서 상벌을 논하였다. 예를 들어 세종 11년(1429) 『실록』 기사에 따르면, 의생이 백성을 구료하지 않은 경우 논죄하고, 실적이 좋으면 연말에 부역을 경감하는 상을 주었다.³²⁾ 연

산군 3년(1497) 『실록』 기사에 의하면, 의생이 병 치료에 태만하지 않은가 감찰하여 죄를 논하고, 계절마다 상을 주거나 죄를 주도록 하였다.³³⁾

(2) 觀察使 考講

성종 3년(1472) 『실록』 기사에서는, 감사가 각 고을을 순행하여 고강하여 권징하게 하였다.³⁴⁾ 이에 대해서는 성종 22년(1491)까지의 법령모음집인 『대전속록』에 자세히 다. 『예전』 「獎勸 조」를 보면 “관찰사가 고강하여 醫方에 정통하면 戶內를 完護하였고, 미련하여 불통하면 充軍한다.” 하였다.³⁵⁾

(3) 年少聰敏

성종 22년(1491)까지의 법령집인 『대전속록 예전』 「獎勸 조」에는 “의생 중에서 연소총민으로 글을 아는 이를 뽑아 전의감과 혜민서에 나누어 속하도록 하여 교육한다.” 하였다. 여기에는 지역별로 배정된 정원이 나오는데 총원은 34명으로 다음과 같다.

표 5. 『대전속록 예전』 「獎勸 조」 연소총민 분정

도	군현명
경기 4	광주 양주 여주 파주 각1
충청 5	충주 청주 공주 각1, 홍주 2
전라 6	전주 나주 제주 각2
경상 10	경주 3, 상주 안동 진주 각2, 성주 1
강원 2	강릉 원주 각1
황해 3	황주 1, 해주 2
영안 1	안변 1
평안 3	안주, 정주, 의주 각1

또한 『대전속록 예전』 「獎勸 조」에선 “이들을 5년에 한 차례 뽑아 올려 보내면, 保人 두 사람을 붙이고, 전의감과 혜민서에 나누어 속하게 하여 의원이 교육하도록 하여, 계절마다 예조 당상과 양의사 제조가 고강하고 연말에 상을

28) 본고에서 『속대전』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29) 본고에서 『대전통편』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30) 본고에서 『대전회통』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31) 본고에서 『육전조례』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32) 『실록』 세종 11년 4월 18일 기사
 33) 『실록』 연산 3년 9월 29일 기사
 34) 『실록』 성종 3년 3월 14일 기사.
 35) “觀察使考講, 有醫方, 精通入則戶內完護, 頑不通曉者充軍.” 본고에서 『대전속록』 원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을 참고하였다.

주거나 죄를 준다.” 하였다.

3) 업무

(1) 主務

① 고을 백성 치료

각 고을 의생의 가장 주요한 업무로 지방에 의생 제도를 마련한 이유이다. 『실록』에는 이에 대한 사례가 풍부하다.³⁶⁾

② 鄉藥 진상 보조와 채취

의생은 藥夫와 함께 고을에서 산출되는 향약 채취 업무에도 관여하였다.³⁷⁾ 이 약재는 중앙 醫司에서 사용되기 위해 진상되는 몫³⁸⁾뿐 아니라, 해당 고을의 소용을 위한 몫도 해당되었다.³⁹⁾ 의생이 진상에 관여하는 경우 醫生과 달리 “進上醫生”이라 하여 따로 불렀는데, 해마다 맡는 소임은 아니고 순환보직이었다.⁴⁰⁾

③ 의학 학습

의생을 교육시키는 이는 중앙에서 파견된 의학교유관(심약)이다.⁴¹⁾ 그러나 의학교유관은 약재 진상이라는 보다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다,⁴²⁾ 임기가 1-2년이라 자주 교체되고, 한 도에 정원이 1-3명에 불과하여, 제도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종 3년에는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의생을 교육을 맡도록 하였으나,⁴³⁾ 이 또한

수령이 의학에 정통하지 않았기에 미비점이 있다. 성종 22년의 『대전속록 예전』 「獎勸 조」를 보면 외방의생의 교육을 교수와 훈도가 맡도록 하였는데, 이들 또한 수령과 같은 이유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와 훈도 또한 고강하여 상벌을 논하는 한편, 의생 중 연소총민을 뽑아 중앙 醫司에서 교육하는 방법도 함께 시행하였다.

④ 檢驗

의생은 해당 고을의 행정에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때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검험을 맡았고,⁴⁴⁾ 유배된 죄인에게 사약을 내릴 때 의생이 들어가 검험하였다.⁴⁵⁾ 또한 병을 칭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대신 군역을 서게 한 이를 수령과 함께 실체를 조사하기도 하였다.⁴⁶⁾

⑤ 지방 囚人 치료

중앙의 경우, 형조와 의금부·월령의가 하는 역할을 지방에서는 해당 고을의 의생이 담당하였다.⁴⁷⁾

(2) 分差

① 使行 원역 질병 치료

외국 사신을 호종하는 원역이나 외국 사행 원역의 질병 치료를 하였다. 평안도 의주목과 같이 사신의 왕래 여로에 위치한 고을의 의생은 사행의 치료를 맡았다.⁴⁸⁾ 세종 7년(1425)에는 사신을 영접할 때에 도내의 숙련된 의학생도

36) 『실록』 세종 11년 1월 29일 기사, 세종 19년 2월 4일 기사, 세종 27년 11월 6일 기사, 문종 1년 11월 3일 기사, 세조 7년 2월 3일 기사 등
37) 『실록』 세종 17년 9월 25일 기사, 『승정원일기』 숙종 37년 4월 14일 기사, 본고에서 승정원일기의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에서 발췌. 『실록』 태조 2년 1월 29일 기사를 보면 향약을 채취하는 丁夫를 따로 두기 시작한 것은 태조 2년이다. 이를 藥夫 또는 藥輩라고도 부른다.
38) 『실록』 세종 16년 1월 30일 기사, 『승정원일기』 숙종 32년 8월 16일 기사.
39) 『승정원일기』 인조 4년 윤6월 6일 기사. “故列邑皆有醫生藥夫, 非但爲醫司之貢, 亦所以應各營之需.”
4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op. cit. p. 343. 박진철. 『조선시대 향리층의 지속성과 변화』. 과주:한국학술정보, 2007:101-102, 124.
41) 의학교유관과 심약 명칭 변화에 대해서는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5;28(2):61.을 참조바람.
42) 약재 진상에서 심약이 약재를 검수하는 들이는 시간 외에도, 大畧의 경우 직접 도성에 가야하므로, 그 왕래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의생 교육 문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약재 진상 관련한 잘못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흔하다는 점에서, 심약 업무 중 어떠한 일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박훈평, op. cit. p. 65-67.을 참조바람.
43) 『실록』 성종 3년 3월 14일 기사. “外方醫生 教授訓導 兼掌教訓”. 여기서 교수와 훈도는 유학교수와 유학훈도를 지칭한다.
44)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3월 1일 기사.
45) 『실록』 영조 5년 3월 28일 기사.
46) 『실록』 문종 1년 1월 15일 기사.
47) 『실록』 문종 2년 2월 17일 기사. “外方則醫生, 每當囚人拷訊之後, 用湯藥水, 洗去傷處, 又施適藥, 使其杖瘡, 不入肌膚.”
48) 『실록』 중종 30년 8월 10일 기사.

한 사람을 매 행차에 배정하도록 하여, 사신을 호송하다 병난 군인의 치료를 하였다.⁴⁹⁾

② 水軍營 병사 치료

『실록』 세종 6년(1424) 기사에서 충청도처치사가 의생으로 하여금 船軍을 치료하도록 아뢰는 내용이 있다.⁵⁰⁾ 각도의 병영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의관인 審藥이 배속되어 치료를 담당했지만, 수군영의 경우는 따로 배속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으로 수군영 근처 고을의 의생이 수군영 병사 치료를 담당하였다.

4) 급료

향리로서의 의생은 향역이기 때문에, 의무이므로 다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샅이 주어졌다.

(1) 토관직 녹봉

토관직을 제수 받으면 동반직 品官이므로 당연히 녹봉을 받았다. 예를 들어 태종 7년의 영흥부 土官 직제에서 6품 醫學丞은 5結, 9품 醫學助教는 一結五十卜의 地祿을 받았다.⁵¹⁾

(2) 약재 진상 시 人情과 行下

전의감이 편찬한 『심약사례』에는 약재 진상에 관련한 의생에게 주는 人情과 行下の 사례가 나온다.⁵²⁾

2. 고찰

1) 의생의 신분

(1) 의원생도

태조 2년(1393) 『실록』 기사에 따르면 “界首官의 醫院에 生도는 양반의 자제를 뽑아, 그 중 教導를 정하여 백성을 치료하는 경험방을 익히도록 한다.” 하였다.⁵³⁾ 즉 의원생도는 원래 그 신분을 양반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방에서 양반의 자제가 얼마나 의학생도로 입속 하였는가는 회의적이며, 실제로 중앙의 경우는 의학을 천하게 여겨 양가자제의 기피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⁵⁴⁾ 사역원의 경우를 보면 생도가 사대부의 자제가 아니라 거의 외방의 한미한 사람으로 채워졌으니,⁵⁵⁾ 의학 관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의생 신분의 하락도 예종 초기의 의학교육관에서 심약으로의 명칭변화의 한 이유였다.⁵⁶⁾ 또한 의학생도 고과 관련 규정이 조선 중기 이후에 언급되지 않은 까닭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 향리로서의 외방의생⁵⁷⁾

① 외방의생의 향리화

의생신분이 하락하면서 외방의생은 향리 계층이 주 구성원이 되었고, 기타 色吏의 하나로 치부되었다.⁵⁸⁾ 조선 후기 문헌에서는 의생을 향리의 부류로 언급한다. 예를 들어 경상도 상주의 『人吏廳所任』에서는 각종 色吏 가운데 하나로 기술되며,⁵⁹⁾ 『승정원일기』에서도 律生과 더불어 “假吏”라

49) 『실록』 세종 7년 1월 15일 기사. “道內習熟醫學生徒一名, 每行定送. 一, 使臣護送後還來時及使臣迎逢入歸時, 病軍治療及物故人埋葬帶來等事, 百戶及醫學生徒, 一同以上項例施行, 不用心者, 依律論罪.”
 50) 『실록』 세종 6년 3월 11일 기사. “忠淸道處置使啓: “水營及左右道各浦, 請令各官醫生, 將所產藥材, 每浦各一名相遞番, 船軍有病者, 隨證治療.” 命如啓, 并他道行移.” 처치사는 임시로 파견하는 군대의 사령관.
 51) 『실록』 태종 7년 9월 1일 기사.
 52)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역주 심약사례 상하』. 서울: 퍼플. 2015: 上 66, 107, 下 10, 14, 50.
 53) 『실록』 태조 2년 1월 29일 기사.
 54) 『실록』 세종 27년 10월 20일 기사.
 55) 『실록』 성종 9년 11월 5일 기사.
 56)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5;28(2):61.
 57) 외방의생의 범주에는 조선 초기의 의원생도도 들어간다.
 58) 『연조귀감』은 이진홍이 향리들의 사적을 모아 정조 1년(1777)에 초간하고, 손자인 이명구에 의해 헌종 14년(1848)에 2책으로 속관이 간행된 책이다. 이 책에는 여러 향역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는데, 의생의 경우 향리로서의 의생이 중앙 의료관청의 의학생도와 관련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명구. 『橡曹龜鑑 坤』. 간행지미상: 간행처미상. 1848:39. “醫生者, 卽麗朝成宗時, 貢生醫方足用之稱, 一 중략 一 我朝, 有典醫監惠民署醫生, 禮朝試才, 差有審藥.”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본을 통합뷰어를 통해 참조하였다.
 5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op. cit. p. 343.에서 재인용

언급한다.⁶⁰⁾ 향리의 부류라는 말은 그 신분이 양인이긴 하지만 향역에 매여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는 일정부분 세습을 전제한다.

조선 전기에는 제한적이거나 향리의 신분 상승 기회가 있었다. 먼저 태종 7년의 영흥부 土官 직제,⁶¹⁾ 세종조의 토관직제(표1 참조) 등을 통해 향리가 토관이나 品官으로 출사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토관이 되면 본인과 자손이 기존 향역을 벗어났고, 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⁶²⁾ 둘째 조선 초 중앙의 의학생도가 한성부와 각 도 계수관에 의해 선출된 양인 자제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기에 향리인 의생도 기회를 얻었다.⁶³⁾ 의학생도는 의과와 醫司 취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예로 중종 20년(1525) 식년시 의과에 등과한 金彦臣은 거주지가 경상 진주이고, 전력이 醫生이므로, 진주의 의생으로 추정된다.⁶⁴⁾

조선 전기에 향리의 중앙 관서 의관 진출이 드물게나마 가능했다면,⁶⁵⁾ 조선 중기 이후로는 서얼가계들이 기술직 중인가계에 진출하면서 그런 기회마저 없어지게 된다.⁶⁶⁾ 기술 관청들이 完薦制를 통해 생도 입속을 실시하면서, 신규 가계들의 편입이 어렵게 된다. 지방 행정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토관직들이 점차 없어진 것도 이 시기와 맞물려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중앙 의생은 서얼 가계에서 유래한 기술직 중인 계층으로, 외방의생은 향리 계층으로 신분이 완전하게 나뉜다.⁶⁷⁾ 물론 기술직 중인계층과 더불어 향리도 넓은 범주에서는 중인이라는 신분의 테두리에 들어가나, 그 기원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② 의생의 세전

향리로서의 의생은 다른 향리 직역을 감당하기도 하였기에, 향리 내에서 특정한 계층을 형성하지 않는다. 즉 首律生 등 다른 色任을 맡았던 이가 의생을 맡았다가, 다시 다른 色任을 맡는다.⁶⁸⁾ 따라서 조선후기 들어 향리 직임은 일부 가문들에 의해 독점이 이루어짐에도, 의생 직임 자체에 대한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앙 의생이 여러 천문학, 역학, 의학 등 기술직별로 가계들의 양상이 달라지는 반면 외방의생은 전문화에 따른 가계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의생의 지위

(1) 중앙과 외방의생 지위 비교

외방의생은 중앙에서 과견된 의학교육관(심약)에 의해 교습을 받는 한편, 해당 고을의 일차 의료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역할들은 중앙에선 여러 의원 직역으로 분화된 것이다. 중앙의생은 장차 醫科과 취재를 통하여 의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컸다. 반면 외방의생은 의술을 베푸는 의료인으로서 역할이 더 컸다.

외방의생에 대한 조정의 입장은 공조관서 梁誠之의 상소를 통해 알 수 있다. “외방의 각 官에 이르러서는 의생이 있다하더라도 다만 그 수만을 채울 뿐이다.”⁶⁹⁾ 외방의생은 대민 치료를 직접 담당하는 일차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60) 『승정원일기』 현종 11년 10월 3일 기사. “醫生·律生·公私賤, 皆假吏也” 그런데 향리가 아닌 “假吏”라고 굳이 표현한 점에서 원래는 향리와는 다른 명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61) 6품 醫學丞과 9품 醫學助教. 『실록』 태종 7년 9월 1일 기사.

62) “徙民入居하여 토관으로 호장, 기관, 장교 등이 된 자는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향역이 면제되는 자라는 의미였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op. cit. p. 342.

63) 세종 9년(1427)에 외방 고을의 각 관은 의원생도로 하여금 부역을 시키지 말고, 오로지 의업만 익히도록 하여 재주가 능한 자를 매년 말에 2-3명을 관찰사가 추천하여 전의감과 혜민국에 보내게 한 것이나, (『실록』 세종 9년 11월 2일 기사. “令外方各官, 毋役醫院生徒, 專爲習業, 才能者, 選送典醫監及惠民局.” 下政府諸曹議之. 兪議啓: “每歲季, 監司選送, 不過二三人, 如無堪中者, 不必歲舉.” 從之.) 예종 1년(1469)에 양성지의 상소에서 현마다 1인, 군마다 2인, 도호부 이상마다 3인씩 취해서 전의감에 소속시켜 1-3년간 생도로서 교육시키자는 것(『실록』 예종 1년 6월 29일 기사)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의생의 학습 권장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64) 편저자 미상. 『嘉靖四年乙酉三月二十六日文科榜目』. 서울:간행처미상. 1525:1-28.

65) “조선 전기에만 문과에 3명의 貢生이 합격했으며, 생원진사시에는 84명이 합격했다. 향리 출신으로 문과에 합격한 뒤에 고관이 된 9건의 사례를 밝힌 연구도 있다. 향리들의 과거응시가 법제상으로 막혀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잡과의 경우는 어땠을까. 향리 三丁一子는 잡학생도를 거쳐 기술관에 입속할 수 있었다. -중략- 그들은 잡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인 제한은 없었다. 향리삼정일자가 합격하면 그 자손의 천역을 면해 주도록 했다. -중략- 향리의 잡과응시를 허용했음에도 413명의 잡과입격자 가운데 3명에 그친 것은 향리삼정리자의 잡과 진출이 그다지 많지 않았음을 추정케한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op. cit. p. 271-272.

66) 박훈평. 『조선 중기 삼의사 의관 가계배경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73.

67) 김필동은 조선 초기의 향리는 호장, 기관, 장교, 통인의 네 범주였고, 조선 후기의 향리는 호장, 기관, 의생, 율생, 공생, 서원 등이라고 논하였다. 전기의 군교가 향리에서 제외되었고, 의생과 율생은 특수한 기능직으로서 후기에 와서 좀더 분업화된 것으로 본다. 의생은 보통 향리들이 업무를 보는 작성이 아닌 藥方(醫方)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았다. 김필동. 『차별과 연대』. 서울:문학과학지성사. 1999:176-180, 192.

68) 박진철. op. cit. p. 101-102, 124.

69) 『실록』 예종 1년 6월 29일 기사. “至於外方各官, 雖有醫生, 徒備其數.”

그 효과와 의학적 능력에 대해서 위정자들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로 보면 일제 강점기에 한의를 낮추어 부르던 용어인 의생은 조선시대 중앙의생보다 외방의생에 그 업무와 성격이 보다 더 가깝다.⁷⁰⁾

(2) 향리 계층 내 의생 지위

박진철은 전라도 나주의 향리 명부인 『各房掌先生案』과 『作廳先生案』 등을 통해 戶長, 六房, 色吏 층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다만 몇몇 특정 가문만이 중요한 이임인 이방과 호장을 수행함을 밝혔다.⁷¹⁾ 醫生을 맡은 가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즉 의생은 향리 계층 내에서도 상위 직업이 아니었다.

III. 결론

의생 용어는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이므로, 반드시 시기를 특정해서 구분해야 써야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그 이전과 확연한 의미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 또한 시기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생이 성격과 지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본고는 조선시대 지방의생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논자는 본론 내용을 통해 여러 법전과 『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고찰하여 의생 직제에 대하여 정원과 업무 등을 살피고, 의생의 신분에 대하여 논하였다.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첫째, 외방의생은 조선 전기에 비해 후기에 신분과 지위가 하락하였다. 조선 초기 지방에서 양반 자제를 생도로 삼으려던 계획은 당대에 실패했고, 외방의생이 토관직을 받거나 중앙의생으로 진출하는 길도 조선 중후기에 오면서 축소되고 폐지되었다.

둘째, 조선후기 외방의생은 향리 계층화되었다. 향리로서의 의생은 향리 계층 내에서도 상위에 속하지 않았으며, 순환 보직의 하나로 치부되었다.

셋째, 외방의생은 의료인의 역할이, 중앙의생은 의학을 배우는 학생의 기능이 주요했다. 외방의생은 지방에서 일차

의료인 역할을 했지만 당대 위정자들의 평가는 낮았다.

참고문헌

1.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4-5.
2.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5;28(2):59-72.
3. 박훈평. 「조선 중기 삼의사 의관 가계배경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3;26(2):173.
4.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김훈, 등. 『한의학통사』. 고양:대성의학사. 2006:80.
5. 김두중. 『한국의학사 전』. 서울:탐구당. 1966:200, 418-419.
6. 김필동. 『차별과 연대』. 서울:문화과학지성사. 1999:176-180, 192.
7. 박진철. 『조선시대 향리층의 지속성과 변화』. 과주:한국학술정보. 2007:31-33, 101-102, 124.
8. 傅芳, 鄭金生, 廖育群 저.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역. 『중국 과학기술사 의학편』. 서울:일증사. 2003:517-518, 739.
9. 三木榮. 『訂補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思文閣. 1991: 113, 123, 156.
10. 손홍렬. 『한국 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수서원. 1988:214-218, 275.
1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려 조선전기 중인 연구』. 서울:신서원. 2001:271-272, 342-343.
12. 이명구. 『연조귀감 坤』. 간행지미상:간행처미상. 1848: 39.
13. 이준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연구』. 서울:일지사. 1990:32-33, 362-365.
14.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직역 연구』. 서울:일조각. 1993: 217.
15. 전의감 편, 박훈평 역주. 『역주 심약사례 상하』. 서울: 퍼플. 2015:上 66, 107, 下 10, 14, 50.
16. 편저자 미상. 『가정사년 을유삼월이십육일 문과방목』. 서울:간행처미상. 1525:1-28.
17.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70) 일제 위정자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수준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71) 박진철. op. cit. p. 31-33.

18.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1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검색(<http://e-kyujanggak.snu.ac.kr>)
20.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